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부동산 투기행위에 관한 조치사항 중 「소득세법」, 「주택법」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등 타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(2024. 11. 21. ~ 2024. 12. 6.) 및 행정예고
(2024. 11. 21. ~ 2024. 12. 18.) 결과 별도 의견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 4-1-1. (1) 중 “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”를 “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”로 하고, 같은 장 4-1-1. (2) 중 “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주택법」 제63조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장 4-1-1. (3) 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3)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장 부동산 투기행위에 관한 조 치	제4장 ----- --
4-1-1. 시장군수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불 안정하거나 투기행위가 우려되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(법 제42조).	4-1-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(1) <u>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</u> 2의 규정에 따른 토지투기지역 지정	(1) 「 <u>소득세법</u> 」 제104조의2----- ----- --
(2) <u>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</u> 투기과열지구 지정	(2) 「 <u>주택법</u> 」 제63조의 규정에 <u>따른</u> ----- ---
(3) <u>국토계획법 제117조의 규정에</u> <u>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</u> <u>정</u>	(3) 「 <u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</u> <u>법률</u> 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토 <u>지거래허가구역 지정</u>